

■ 최신 법령/규정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심희정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1. 개요

2015년 7월 24일 공포되어 2015년 10월 25일부터 일부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2015년 10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아울러 이에 대한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도 함께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된 내용은 크게 (i)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의 도입과, (ii) 사모펀드 제도 전반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사모펀드 활성화로 나뉘 수 있는데, 금번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 중 사모펀드 제도 전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 제6조의2)

기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되었는데, 앞으로는 합자조합·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시행령 제7조 제4항, 제5항, 제301조 제4항)

투자자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여야 하고, 해당 외국 펀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여야 합니다. 이는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9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 등')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 등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특수채증권, 기타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여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하였습니다.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시행령 제91조 제2항)

기존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시행령 제99조 제2항)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시행령 제271조 제2항)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에 따라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을 최소 투자하여야 적격투자자로서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시행령 제271조의2 제3항, 제4항)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인 이상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 원 등을 갖춰야 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시행령 제271조의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i) 전문투자자 또는 (ii)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시 보고사항(시행령 제271조의9)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에 대해서 보고하는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①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시행령 제271조의14)

지금까지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②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 자격의 완화(시행령 제271조의19)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하는 SPC인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의 자격을 사모투자합자회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가하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